

77 20 25
117 50 27

발행인: 서울특별시시장 이 해 원
편집인: 광 보 관 유 천 수
전 화: 731-6111~3
인 쇄: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273-8111~3

차 례

● 규 칙

제 2373 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3

● 교육규칙	
제 366 호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32
제 367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폐지규칙 35
제 368 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35

제 97 호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광장)실시계획인가	68
제 98 호	도시계획사업(유동업무설비)시행허가및고시	80

〈이면계속〉

[illegible]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청결로 자연보호 질서로 사람보호”

● 공 고

제 98 호 관인(청인)재교부공고	80
제 99 호 관인재교부공고	81
제 102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시행에따른서류관람공고	82

● 구 고 시

제 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영등포)	83
제 9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시행변경허가고시(도봉)	84
제 20 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시행허가(노원)	84

● 구 공 고

제 3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양천)	85
제 37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구로)	85
제 39 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설시계획공람공고(영등포)	86
제 5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설시계획공람공고(은평)	86
제 5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성동)	87
제 11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입안공람공고(서초)	87
제 130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및영업정지)공고(서초)	90
제 17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도봉)	95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4. 9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

●서울특별시규칙제2373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내용)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건설사업계획의 종합적인 적정성
2. 시설물의 구조·설비의 타당성
3. 시설물의 평면계획·입체계획·환경계획 및 미관계획 등의 적정성
4. 공법선택의 타당성과 새로운 공법적용의 가능성
5. 공사시방내용, 공정계획 등의 적정성

제3조(심의요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서류 각 10부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제1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
2. 조례 제3조제2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새로운 공법에 관한 설명서, 관련 설계도서와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서

제4조(기술검토) ①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각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개최전에 기술분야별로 위원·관계전문가 또는 관제 공무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등으로 하여금 실무책임자를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제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①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안명·회의 일시 및 회의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등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제3조 각호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개최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해당 건설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이하 이 항에서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함께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설명하거나 해당 건설관련

5급이상 공무원과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의결) 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심의·의결한다.

1. 원안채택: 해당 의안에 결함이 있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2. 조건부채택: 해당 의안의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기본설계 심의시에 당해 기본설계에 있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시에 다시 심의받는 조건으로 기본설계를 채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재심: 해당 의안의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각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제7조(서류의 보관) 각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서류를 심의완료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심의요청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보고서식)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7조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보관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3조제1호 관련)

1. 토목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주요한 설계기준, 구조물형식 선정, 단면결정 등),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할 것을 말한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규모·금액등 ○ 계획 및 방법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조 및 수 리 계 산 서	• 위치선정 •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주요조성계획 (사면보호·식재계획등) • 환경영향평가(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전조사사항 ○ 주요시공계획 ○ 주요자재사용계획 ○ 개략공정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 경제분석 -공사비산출 -유지보수비 -경제분석 • 기타 사항		
	○ 주요구조 계산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용 • 기초하중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 하중액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완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토 지 조 사 보 고 서	토질개황 ○ 개략토질조사(시추·시험·쿨리탐사등) ○ 개략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씨비알(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 시험)		
개 략 설 계 내 역 서	○ 설계설명서 ○ 개략공중별 내역서 ○ 개략수량 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 면 종 류	속 격	사 항
선 계 도 면	위 치 도	5만분의 1 내지	주변지형지를 표기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척	사 항
	중 단 면 도 및 평 면 도 횡 단 면 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조경도	5천분의 1 축척지형도 1천200분의 1 내지 3천분의 1 100분의 1 내지 500분의 1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200분의 1 내지 600분의 1	주요시설물 종평면도 주요횡단면도 주요구조물계획도 표준도 주요부대시설도 주요가시설물 도면 주요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도)
나. 설치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보 고 서	○ 공사개요 목적·범위 및 내용·기간·과업수행지침·금액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식재계획등) · 환경영향평가(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전조사사항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조 및 수리 계 산 서	• 경제분석 - 공사비산출 - 유지보수비 - 경제분석 • 기타 사항 ○ 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결정계산 및 사유 • 기초하중지력계산 • 각부 구조의 제 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수리모형 실험결과
토 질 조 사 보 고 서	- 토질개황(목적·범위·조사기간) ○ 세부토질조사(시추·시험·굴리탐사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 세부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썩비알(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 부 록 • 지질분포현황도 • 토질조사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 토질조사위치 상세도(축척: 1천 200분의 1) • 재료원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및 동적콘 관입시험결과 추상도 • 시험굴 추상도 • 핸드오가 보링추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하상골재-석산골재)
시 방 서	○ 주요시방내용 • 일반시방서 - 일반사항 - 공종별 일반사항 • 특별시방서 - 공종별·단재별 세부시방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척	사 항
설계도면	위치도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축척지형도	○ 주변지형지물 표기
	중단면도 및 평면도	1천 200분의 1 내지 3천분의 1	○ 세부종평면도
	횡단면도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 세부횡단면도
	구조물도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	○ 세부구조물
	부대시설 물도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 세부부대시설물도
	조경도	200분의 1 내지 600분의 1	세부가시설물도 ○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식재계획등)
설계내역서			○ 설계설명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다. 설계변경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보고서	1. 공사개요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사전조사사항·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사유서) ·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2. 변경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세부조정 계획 (사면보호·식재계획등) 3. 사전조사사항 4. 세부시공계획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 조 및 수리계산서 토 질 조 사 보고서시방서	5. 자재사용계획 6. 세부공정계획 7. 세부공사비산정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1. 변경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 기초하중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채 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변경토질현황·조사·시험보고서 ○ 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일반 및 특별시방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 면 종 류	속 격	사 항
변경설계 도 면	위 치 도 종 단 면 도 및 평 면 도 횡 단 면 도 구 조 물 도 부 대 시 설 물 도 조 경 도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축척 지형도 1천 200분의 1 내지 3천분의 1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200분의 1 내지 600분의 1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 " "
변경설계 내 역 서			○ 변경세부설계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2.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건축계획서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평면·단면·입면·구조·재료·설비·공사비·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 명 서	○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개략공사기간·공종별 개략공사비등 ○ 설계개요 지역·지구·구조·규모·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율·주차면적·조경면적·최고높이·층고·층별면적·각층 수용도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토지현황, 시설물현황 등)·강우량·바람·동결심도·적설량·교통·수용인원·장비등 ○ 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과정 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개략조경계획, 주차계획, 수명·수직동선계획, 방재계획 ○ 공종별 개략공사비 산정 ○ 개략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사항
구 조 제 회 서	○ 설계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강도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적용 ○ 구조형식의 선정 및 선정근거 ○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층고, 바닥면구조, 지붕구조 ○ 주요구조부재의 개략 단면 산정제산서 ○ 내진구조 계획 개요(해당 건물에 한한다)
토 질 조 사 보 고 서	○ 토질개황 ○ 토질조사 및 토질추산도 작성 ○ 토질시험(표준압입시험·평판재하시험·토성시험등) ○ 지내력 산출근거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지하수위 ○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 격	사 항
설계도면	부근안내도 투 시 도 배 치 도	입 의 입 의 600분의 1 이하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색채사용 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 안 도로의 위치·너비,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관계 및 동선처리, 심사대상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그림·용벽·정화 조·배수시설·주차장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조경계획도	200분의 1 내지 600분의 1	축척, 식수평면계획, 수종, 조경면적 산 출내용과 조경시설물(원경조각·상징물 ·벤치·파고라·분수·휴게소·휴지통 등), 유희시설, 체육시설등의 위치·크 기·바닥·천정·내벽·외벽·지붕등
	건축물내외 마 감 표 작층평면도	100분의 1 이상	축척, 방위, 각 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너비·작동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너비, 복도의 위치 및 너비, 승 강기의 위치 및 너비,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 전시대, 병원침대 등 각 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입 면 도 (4면)	100분의 1 이상	축척, 외벽, 지붕, 옥상·출부, 출입구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주 단 면 도	100분의 1 이상 (중·횡 2개소 이상)	건축물의 각 실 및 계단등의 전체조 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주단면도 를 작성하며 축척, 기초의 크기, 재료,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 종류	축 적	사 항
	구조계획도	100분의 1 이상	각 실의 층고, 천정고, 바닥두께, 재료, 반자의 구조, 재단, 승강기, 경사로동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 단열마감울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마감울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 크기 등 ○ 각종 구조틀도(기둥 및 보 등 주요 구조부) ○ 골조단면도(중형 2개소 이상)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설 명 서	○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종별공사비등 ○ 설계개요 지역·지구·구조·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율·주차면적·최고높이·조정면적·층별면적·각층 수용도등 ○ 사전 조치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 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과 정 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세부조경계획, 세부주차계획, 수명·수직동선계획, 방재계획, 세부배치평면·입면계획 등 ○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세부공정계획 ○ 세부설비계획 ○ 세부자재계획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 구조의 형식 선정 ○ 각 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층고, 바닥판 구조, 지붕구조 ○ 구조계산서 ○ 각 부 하중계산, 구조해석, 부재의 설계(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구조계산시에는 프로그램의 종류, 구조해석방법, 설계조건, 계산과정 및 출력자료의 명시) ○ 내진구조계획 및 구조방식 명시(해당 건물에 한한다)		
토질조사 보고서	○ 토질개황 ○ 토질조사 및 토질구상도 작성 ○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평판재하시험·토성시험등)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 ○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		
시 방 서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 격	사 항
설계도면	부근안내도 투 시 도 배 치 도	임 의 임 의 600분의 1 이하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색채이용 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 안 도로의 위치·너비,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관계·동 선거리, 심사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 물과의 구별, 등고선, 옹벽, 정화조, 배 수시설, 주차장등의 계획 및 시공에 필 요한 사항 상기사항(배치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
	부분배치도	300분의 1 이상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 적	사 항
	주차장평면도	100분의 1 이상	축척,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동로 및 출입구의 위치·너비등
	구적도 및 건물면적산출표 조경계획도	200분의 1 이하 600분의 1	축척·식수평면계획·수종·조경면적 산출내용과 조경시설물(환경조각·상징탑·벤치·파고라·분수·휴게소·휴지통등)·유흥시설·체육시설등의 위치 및 크기
	조경상세도	50분의 1 이상	수목·잔디·조경시설물·유흥시설·체육시설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일체
	조경토목계획도	200분의 1 이상	조경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일체
	조경토목상세도	50분의 1 이상	토목구조물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일체
	건축물내의 마감표		바닥·천정·내벽·외벽·지붕등
	각층평면도	100분의 1 이상	각실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단위평면도	50분의 1 이상	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층천장평면도	100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지붕평면도	10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입면도(4면)	100분의 1 이상	축척, 외벽, 지붕, 옥상돌출부, 출입구의 형태, 계구부의 위치 및 크기
	주 단 면 도	100분의 1 이상	건축물의 각 실 및 계단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주단면도를 작성하여 축척, 기초의 크기·재료, 각 실의 층고·천정고·바닥두께·재료, 반자의 구조, 계단·승강기·경사로 등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단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크기등
	주단면상세도	50분의 1 이상	주단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적	사 항
	개별실단면	30분의 1 내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상 세 도	50분의 1 이상	
	지붕단면상세도	30분의 1 내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50분의 1 이상	
	계단평면·	5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상세도		
	굴뚝상세도	3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삿다·빗트·발코	30분의 1 내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니들부분상세도	50분의 1	
	창호일람표	100분의 1 이상	창호의 일람
	각 층 창 호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 면 도		
	창호상세도	5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고정및부착	100분의 1 이상	병상·실험대·침상·수거전시설·전
	시설물배치도		시대·보일러등의 고정시설과 부착
			시설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부착시설물	10분의 1 내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상 세 도	30분의 1	
	기초구조평면도	10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초구조배근도	3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 초 구 조	3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상세도		
	각층기둥·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보 일 람 표		
	각층보·바닥판	30분의 1 이상	
	단면상세도	10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지붕구조평면도		
	지 붕 구 조	3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상세도	3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계단구조배근도		
	및 단면상세도	50분의 1	
	옹벽구조배근도	5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옹 벽 구 조	30분의 1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속 격	사 항
	단면상세도 구조부재조립도 (P.C 철골 및 트러스인 경우) 구조부재 전합상세도 (P.C 철골 및 트러스인 경우)	3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상 50분의 1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다. 설계변경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절제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 구조·건축면적·연면적·전폐율·용적율등 · 수평·수직동선계획·세부배치·평면·입면계획등 · 세부공정계획 · 세부자재계획 · 공법비교검토		
구조계획서	○ 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제안서		
토질조사서	○ 기초구조 설계 변경시		
시 방 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일반 및 특기사항서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속 격	사 항
설계도면	부근안내도 투 시 도 배 치 도 건축물내외 다 장 표	임 의 임 의 600분의 1 이하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 격	사 항
설계도면	부근안내도	임 의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각층평면도	100분의 1 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지붕평면도	100분의 1 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단위평면도	50분의 1 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
	각층천정평면도	100분의 1 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입면도(4면)	100분의 1 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주 단 면 도	100분의 1 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기초, 기둥, 보	1천분의 1 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지붕구조도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각 중 시 공	30분의 1 내지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상 세 도	50분의 1	
	각 중 구 조	30분의 1 내지 50분의 1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3. 기계설비 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설계의 제반조직과 요구사항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사전조사사항·공정 계획·공사비·공사기간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면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규모·공사기간·공사금액등 ○ 주요 생산설비 설비사항,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품목 및 품질(규격), 생산량 등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제안서	○ 주요 설비 - 전력·물·냉동·펌프·공기조화·증기·압공·배선·배관·기타 설비 ○ 복리후생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시공계획 ○ 개략공정계획 ○ 개략공사비 산정 ○ 주요 생산설비의 개략 용량계산서 ○ 주요 생산설비의 개략 용량계산서 ○ 작업능력, 사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계산서 ○ 간이 부하계산서	
구 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도면	일반사항	별례 도면목록
	배치도	기계기구일람표(수량·용량·사양등을 포함한다) 주요생산설비 및 설비의 위치,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연돌, 기계실의 위치, 기 기반출입구의 표시, 인근건물 및 통행인에 미치는 공해사 항, 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탑 위치, 도로 및 배수 계획등
	계통도	주요 생산설비 및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 배수(급탕을 포함한다), 소화, 기타 설비의 계통도
	평면도	각종 설비 샤프트(Shaft)의 크기,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기준층 및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단면도
	옥외공동구	옥외공동구 관리 및 각종 설비평면도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설계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등 ○ 주요 생산설비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시 방 서 설계제안서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품목 및 품질(규격), 생산량등 ○ 주요 설비 전력·물·냉동·펌프·공기조화·증기·압공·배선·배관 기타 설비 ○ 복리후생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당해 공사에 필요한 목기사항 ○ 주요 생산설비의 용량제안서 및 선정서 ○ 주요 설비의 용량제안서 및 선정서 ○ 작업능력, 사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제안서 ○ 부하제안서	
구 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도 면	일 반 사 항	범위 도면목록 기계기구입람표(수량·용량·사양등을 포함한다) 기본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배 치 도 주요생산설비 및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 계 통 도 배수(급탕을 포함한다), 소화 기타 설비의 세부 계통도 평 통 도 각종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기계실 입체 배관도 설 계 도 면 단 면 도 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에 대한 주요 단면도, 기계 실단면도 육의공동구 육의공동구 관리 및 각종 설비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상 세 도 각종 설비별 상세도
다. 설계변경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주요 생산설비, 주요설비, 복리후생설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비계산서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 ○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 설명 ○ 각설별 조도기준, 주요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의 용량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 전화·방재·방송설비등의 산출서	
구 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 계 도 면	부근안내도 법 레 배 치 도 옥외간선도 수변전설비도 전력결선도 설비계통도 설비배치도	○ 방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되는 지형지물등 ○ 사용될 기호 및 부호 ○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위치 및 위치표시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시설물의 위치도 ○ 전력, 통신, 방재, 계장설비 및 기타 주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전력의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점, 수전 검토,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지 또는 구내 설비와의 연결방법등 표시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2차변전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주변전설비의 단선 결선도(2차 변전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축척: 100분의 1 이상 ○ 전동, 견열, 동력, 방재, 방송, 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 - 축척: 100분의 1 이상 ○ 전동·견열·동력·통신·방재·방송·텔레비전공청·계장설비 등의 배치평면도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설계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직경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동종별 공사비통 ○ 주요 설비사항 · 각종 설비(전력·통신·소방·계장·보안, 예비 및 비상전원등에 관한 특징·구성과 설비방식을 명시)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 본 설계에 적용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채택한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설비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등에 채택근거 제시 ○ 조도계산서 · 각설별 조도기준, 설별조도계산서 및 등기구의 특성 ○ 부하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동·전열·동력등의 수용율·부동율 적용 · 수변전설비 용량 산출등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용량산출서 ○ 충전지설비 용량산출서 ○ 수변전설비의 기기정격용량과 단락전류 용량산출서 ○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의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등	
구 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도면	시 방 서	○ 일반시방서 공사시행상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공사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자재시방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영방법, 제작 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다만, 한국공업규격, 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것

구 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부근안내도 범례 배치도	시동의 제규격에 맞는 것은 제품의 당해 규격을 명시하고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 범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등 ○ 사용된 기호 및 부호, 시공장 유의할 특기사항 ○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등
예) Hand Hole(수공), Man Hole(인공) 외등 2차변전설 등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도(2차변전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전선을 포함한다),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상세도 등(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도를 제외한다)
	전력결선도	○ 수변전설비의 단선결선도(특별한 경우에는 3선결선도로 각종 기기, 배선 등에 대한 정격, 조작설명 등을 포함한다)
	설비제통도	축척 : 100분의 1 이상 ○ 전동·전열·동력·통신·방재·방송·텔레비전 공칭·제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제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종별 정격표시 등
	설비배치도	축척 100분의 1 이상 ○ 전동·전열·동력·통신·방재·방송·텔레비전 공칭·제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각종 배치기기 및 배선의 종별로 정격등 표시 ○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등 총부하 표시 ○ 사용할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 각 분전반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부하 계산 ○ 제장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간의 배선도, 각 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 계산 ○ 기타 다른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선도

다. 설계변경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와 변경내용 ○ 설계변경개요 · 각종 설비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 구성, 변전설의 배치 결선도등 · 계장설비 · 특수한 공법기준 ·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방안등
설비계산서	○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용량 계산서 · 축전지설비 용량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등
시 방 서	○ 변경설계에 대한 특기사항
설 계 도 면	○ 원설계도에 변경내용 표시
5. 조경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배치·입면·단면·재료·공사비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면적·범위·개략공사비등 ○ 사전조사사항 · 지질 및 지형, 토양, 강우량, 바람, 기온, 일조, 기존식생, 경관, 주변 토지이용등의 현황 분석 · 관련법규 사항 ○ 계획 및 방침 · 계획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과정의 설명 · 수광선정기준과 상대적 특성 · 시설물개요(종류·규격·재료)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지역별 조정계획 - 공간성적, 식재 및 시설물 계획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척	사 항
설계도면	위치도	임의	방위·도로·대지경계·주변지형지물등
	기본구상	임의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및개념도		조정계획의 기본구상
설계도면	종합계획도	200분의 1	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내지 600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 안 동선의 위치,
		분의 1	폭, 각 시설지의 위치, 크기 등의 기본적인
			배치사항, 지반고
	중·횡단면도	임의	주요시설지의 종단면도, 횡단면도에 식재, 시
			설물의 단면을 표기
	배식계획도	200분의 1	전체적 배식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쾌한
		내지 600	상록교목·낙엽교목·상록관목·낙엽관목·
		분의 1	초화류·지피류등으로 구분 수종규격 개략적
			수당은 표를 작성
	부분배식계획도	100분의 1	주요부분의 배식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
		내지 300	출선에 수종·규격·수량을 구체적으로 표기
		분의 1	
	녹지구적도	200분의 1	녹지면적 산출근거
		내지 600	
		분의 1	
	시설배치도	100분의 1	놀이터·공원·휴게소·광장·수경시설·체
		내지 300	육시설등의 평면배치와 이에 시설되는 각종
		분의 1	시설물의 종류·위치·규격을 표기
	시설물도	10분의 1	시설물의 평면도, 입면도, 형태, 규격, 주요
		내지 50분	계료를 표기
		의 1	
	기 타 사 항		※ 조정계획시 필요한 부지조성계획도, 포장 계획도, 상하수 및 전기시설 계획도등을 첨부할 것.

나. 실시계획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설계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 면적 · 범위 · 공사기간 · 공사비등 ○ 사전조사사항 · 지질 및 지형, 토양, 강우량, 바람, 기온, 일조, 기존식생, 경관, 주변 토지이용등의 현황분석 · 관련법규 사항 ○ 계획및 방침 · 계획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과정의 설명 · 수종선정 기준과 생태적 특성 · 시설물 개요(종류 · 규격 · 재료) · 지역별 조경계획 - 공간성격,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시 방 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 분	도면종류	축 척	사 항
설계도면	위 치 도	임 의	방위 · 도로 · 대지경계 · 주변지형지물등
	기본구상 및 개념도	임 의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종합계획도	200분의 1	조경계획의 기본구상
	중·형단면도	내지 600분의 1	축척 · 방위 · 대지경계선 · 대지가 점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동선의 위치 · 너비, 각 시설지의 위치 · 크기등의 기본적인 배치사항, 지반고
	배식평면도	임 의	주요시설지의 증단면도나 횡단면에 식재 · 시설물의 단면을 표기
	배식평면도	100분의 1	위치표시도 인출선에 수종 · 규격 · 수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수량표를 작성할 것.
	배식입 단면도	50분의 1	프랜터 · 구조물상단녹지 · 성토지 · 사면 보호
		내지 100분의 1	식재등에 유효토심 · 배수 · 식재 · 지관조성등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 종류	축 척	사 항
	식제상세도	10분의 1 내지 50분의 1	관목근식·생울타리조성·수목지지대 설치
	녹지구적도	200분의 1 내지 600분의 1	녹지면적 산출근거
	설치배치도	100분의 1 내지 300분의 1	놀이터·공원·휴게소·광장·수경시설·체육시설등의 평면배치와 이에 시설되는 각종 시설물의 종류·위치·규격을 표기
	시설물상세도	10분의 1 내지 50분의 1	시설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기 타 사 항		※ 조경계획시 필요한 부지조성계획도, 포장 계획도,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계획도등을 첨부할 것.
시 방 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다. 설계변경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설계변경 개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 분	도면 종류	축 척	사 항
설계도면	종합계획도	1/200~1/60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중·형단면도	임 의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배식평면도	1/100~1/30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배 식 입 · 단 면 도	1/50~1/10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척	사 항	
	식제상세도	10분의 1 내지 50분의 1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녹지구획도	200분의 1 내지 600분의 1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시설배치도	100분의 1 내지 300분의 1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시설배치도	10분의 1 내지 50분의 1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시 방 시	변경설계에 대한 표기사항			
6.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부수				
구 분	규격(m/m)	지 질	소요부수	비 고
기본설계 (설계도면)	A ₁ (594×841)	청사진용 감 광 지	10부	투시도·조감도는 란토 지에 그릴 것
실시설계 (설계도면)	A ₀ (841×1,189)	청사진용 감 광 지	10부	
자중 서류 (본계심명서등)	A ₁ (594×841)	임 의	임 의	
	16절지 (190×268)			
	A ₃ (297×420)			
다만, 설계의 내용 및 심의제도에 따라 관제서류의 규격·지질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 1 호서식]

건설기술심의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구분	

건명	
----	--

요청기관명	
제출연월일	

[별지 제 2 호서식]

공사설명서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요청구분	
공사금액	총공사비: 천원	금회공사비: 천원	
설계자		사업구분	일반입찰·대안입찰 ·기타공사
공사개요:			
첨부서류명 및 부수:			
비고:			
비고) 분야별(토목·건축·기계·전기 등) 관련 설계도서 작성 특임기술자의 명단을 따로 첨부한다.			

[별지 제 3 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전 명:

구 분	지 적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비고: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등을 따로 첨부한다.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등의 면수를 기재한다.

[별지 제 4 호서식]

평 가 요 령 서

가. 일반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 행 청:	감 독 관:
시 공 자:	현장대리인:

나. 평가서

구 분	평 가 내 용	반영 정도	참 고 자 료
1. 심의결과조치	가. 지적사항의 시공반영	(수·우·미 ·양 등으로 표시)	(참 고 처 류 사 본 · 도 면 등 첨부)
2.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심의 지적사항의 시 공반영		
	나. 심의대상인 설계변경 현황		
3. 신공법 적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공 법 적용		
	나. 기타 신공법 적용		
4. 시공수준	가.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 리 등의 수준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은 이에 공포한다.

1991.4.10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상준

●서울특별시교육규칙제336호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
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아현직업학교” 다음에
“종로산업학교”를 삽입한다.

[별표 1-1], [별표 1-2], [별표 2-1]및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1)

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연기별	수업료	입학금	비 고
학 교 별	개 일 별	학년별				
대 학	인문· 사회계열	1~4 학년	연	396,000	90,000	6개월을 1기로 함
			기	198,000		
	이학계열	"	연	407,000	90,000	"
			기	203,500		
	공학계열	"	연	433,000	90,000	"
			기	216,500		
	예능계열	"	연	433,000	90,000	"
			기	216,500		
인 반 대 학 원	인문· 사회계열	1~2 학년	연	396,000	90,000	"
			기	198,000		
	이학계열	"	연	407,000	90,000	"
			기	203,500		
	공학계열	"	연	433,000	90,000	"
			기	216,500		
	예능계열	"	연	433,000	90,000	"
			기	216,500		

구 분			연기별	수업료	입학금	비 고
학 교 별	계 열 별	학년별				
도시행정 경영 산업 대학원	인문· 사회계열	"	연	316,800	90,000	6개월을 1기로 함
			기	158,400		
	이학계열	"	연	325,600	90,000	"
			기	162,800		
	공학계열	"	연	346,400	90,000	"
			기	173,200		

[별표 1-2]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학 교 별	구 분	연기별		수업료	입학금	비 고
고등학교 (공·사립, 인문·실업)	분 기	연		461,400	7,700	3개월을 1기로 정수함
		1, 2		110,400		
		3, 4		120,300		
고등기술학교(고)	분 기	연		437,400	7,200	3개월을 1기로 정수함
		1, 2		104,700		
		3, 4		114,000		
방송통신고등학교		연		52,200	3,000	6개월을 1기로 정수함
		반 기		26,100		
중학교(공·사립)	분 기	연		253,200	6,400	3개월을 1기로 정수함
		1, 2		60,600		
		3, 4		66,000		
기술학교(중)	분 기	연		226,800	3,800	3개월을 1기로 정수함
		1, 2		54,300		
		3, 4		59,100		
고등공민학교	분 기	연		149,400	3,800	3개월을 1기로 정수함
		1, 2		35,700		
		3, 4		39,000		

[별표 2-1] 대학교 수업료 분할정수표				
(단위: 원)				
구 분			1 기 (3.1~8.31)	2 기 (9.1~익년 2월)
학 교 별	계 열 별	학 년 별		
대 학	인문· 사회 계열	1~4학년	198,000	198,000
	이학 계열	"	203,500	203,500
	공학 계열	"	216,500	216,500
	예능 계열	"	216,500	216,500
일 반 대 학 원	인문· 사회 계열	1~2학년	198,000	198,000
	이학 계열	"	203,500	203,500
	공학 계열	"	216,500	216,500
	예능 계열	"	216,500	216,500
도시행정 경영 산업 대 학 원	인문· 사회 계열	"	158,400	158,400
	이학 계열	"	162,800	162,800
	공학 계열	"	173,200	173,200

[별표 2-2] 중·고등학교 수업료 분할정수표		
(단위: 원)		
학 교 별	1 기 (3.1~8.31)	2 기 (9.1~익년 2월)
방송통신고등학교	26,100	26,100

학 교 별	1 기 (3.1~5.31)	2 기 (6.1~8.31)	3 기 (9.1~12.30)	4 기 (12.1~익년 2월)
고등학교(공·사립, 인문·산업)	110,400	110,400	120,300	120,300
고등기술학교(고)	104,700	104,700	114,000	114,000

학교별 \ 기 별	1 기 (3. 1~5. 31)	2 기 (6. 1~8. 31)	3 기 (9. 1~11. 30)	4 기 (12. 1~익년 2월)
중학교(공·사립)	60,600	60,600	66,000	66,000
기술학교(중)	54,300	54,300	59,100	59,100
고등공민학교	35,700	35,700	39,000	39,000

1. 이 표에서 “인문계”라 함은 선업체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말하고 “실업계”라 함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 각 학교 또는 학과와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전역을 특급지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4. 10

서울특별시교육감 김 상 준

●교육규칙제367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보조금 관리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257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
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4. 10

서울특별시교육감 김 상 준

●교육규칙제368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소관 공유재산(이하
“교육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
무과장(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교육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
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1. 재산관리관

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무
과장

나. 교육청, 국민학교, 중학교 및 중학교

이하에 준하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청 관할 내의 잠종재산은 '교육장'

다.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고등학교장
라.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사업소장

마. 기타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은 총괄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분임관리관

가. 국민학교, 중학교 및 중학교 이하에 준하는 학교의 장

나. 본청 각 과장

③관리국장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교육재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리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교육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교육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잠종재산에 편입되는 교육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

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교육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동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교육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교육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지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공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전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교육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도면
4. 도시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6. 등기부등본
7.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0조(재해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교육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재해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 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도시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인수인계) 교육감과 재산총괄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절 취득 및 처분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교육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 및 인근지실례가격에 관한 조사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재산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도시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조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소유권 이전) 교육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으며 교육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교육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상대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 상대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서
5. 교환 상대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7. 교환승락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교육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9조(가격평정) ① 교육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임·대차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2. 파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공인감정기관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재산가액 평정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도시계획확인서
4. 도면 및 위치도
5. 가격평정서

제20조(증감평 조정) ①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약정에 따라 처리하되, 증감평된 대금은 계약시 가격으로 한다.

②증감평된 토지 및 건물대금은 증감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 가산 징수 또는 지급한다.

제21조(등기수속 등) ①교육제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과장 및 기관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취득부서에서 교육제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기타 재산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제22조(매수신청) ①본청과장 및 기관장은 교육제산으로의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액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송납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재산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교육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모양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예산조서
6.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재산관리관이 교육재산의 철거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철거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철거 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예산조서 6. 도면 및 전후 양측면의 사진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시설과장 및 건축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 기타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계서(별지 제6호서식)에 배치도, 설계도 각 2부를 첨부(국민학교, 중학교 및 중학교 이하에 준하는 학교는 각 3부)하여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보험의 가입)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건가액의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이 이미 손해보험 중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보험료 상당액을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대장 및 도면 제25조(대장 및 도면 조제) ①재산총괄관은 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교육재산의 대장(별지 제7호서식)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대장정리 및 봉지) ①교육재산에 중·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관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봉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중감이동보고) 재산관리관은 교육재산의 중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다음날 10일까지 재산중감이동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도면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총괄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대부계약)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승인 신청) ①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취득승인신청서 2. 처분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처분승인신청서 3. 교환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교환계약서 4.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무상대부·무상사용
---	---

허가승인신청서

②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 내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양여계약서 또는 공유재산매수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로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증명서(토지·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증서 등)

제33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절 보 칙

제34조(준용규정) 교육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법무회계규칙 중 제7장 재산관리 제112조 내지 제136조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서식)

1.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제11조)
2. 제2호서식 과세(제11조)
3. 제3호서식 행정재산용도변경승인신청서(제15조 제2항)
4. 제4호서식 공유재산가격상징조서(제19조 제1항)
5. 제5호서식 내배설대조서(제19조 제2항)
6. 제6호서식 인계서(제23조 제2항)
7. 제7호서식의 1서식 총괄(제25조 제2항)
8. 제7호서식의 2서식 토지(제25조 제2항)
9. 제7호서식의 3서식 건물(제25조 제2항)
10. 제7호서식의 4서식 잡종재산(토지) 관리대장(제25조 제2항)
11. 제8호서식 재산증감의동보고서(제27조)
12. 제9호서식 인계재산대장(제28조)
13. 제10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제29조)
14. 제11호서식 허가조건(제29조)
15. 제12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제30조)
16. 제13호서식 위탁승인신청서(제31조 제1항 제1호)
17. 제14호서식 처분승인신청서(제31조 제1항 제2호)
18. 제15호서식 교환승인신청서(제31조 제1항 제3호)

항 제3호)	22. 제19호서식 양역계약서(제31조 제2항)
19. 제16호서식 교환계약서(제31조 제1항 제3호)	23. 제20호서식 공유재산대수요구서(제31조 제2항)
20. 제17호서식 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제31조 제4항 제4호)	24. 제21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제32조)
21. 제18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제31조 제2항)	25. 제22호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제33조)

[제1호 서식]

은 녀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 소유자(점유자)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국·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공부등본(별첨)
6. 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등본(별첨)

위와 같이 은녀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제2호 서식]

각 서

19 년 월 일 본인이 색출 신고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신고재산에 대한 법적 경송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신고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지체없이 근거자료를 갖추어 증인으로 출두하겠으며 증인출두로 인한 비용은 일체 받지 아니한다.
3.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색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판명되어 귀사의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이를 지체없이 반납한다.
4. 기타 본인이 신고한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사의 손해는 지체없이 변상한다.

19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제3호 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기관명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대 장 가 격		비 고
				단 가	금 액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유부			
	연월일	목 적	취득합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제4호 서식] 공유재산가액평정조서									
소재지	지번	지포 종	목 는 목	수 량	감정가격	매매일배	사 정 가 격		비 고
							단 가	금 액	
위와 같이 평가함. 19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설명 ㉑ (주) 1. 지목 또는 종목란에는 토지의 경우 지목, 건물·공작물 등은 평형과 구조를 기입한다.									

[제5호 서식]

매 매 실 래 조 서

소재지	지번	지 또 종	목 는 목	수 량	매 매 가 격		매 매 년월일	매수자	매도자
					단	가			

19 년 월 일

소속기관명

조사자 직 설명

①

- (주) 1. 매매실래는 가급적 매각재산의 부근에 소재한 유사재산을 조사한다.
2. 매매실래는 가급적 최근실래를 조사한다.

[제6호 서식]

인 계 서

1. 학교 또는 공사명
2. 재산종목
3. 축조구분
4. 구성재료 및 지붕종류
5. 건물면적 및 연면적
6. 층계별 평수 및 실수
7. 건축가격
8. 건축년월일
9. 기타 참고사항

상기와 같이 인계인수함.

19 년 월 일

인 계 자

인 수 자

인 회 자

3034

제 1556 호

시

면

1991.4.10

(제 7 호 서식의 2서식)													(전 면)	
토 지													구 좌 명 서 울 학 교	
소 재 서울특별시 구 동 번 지 호													색인번호	
구분 종류	토 지		용 도	연 혁			부 속 도 면			번호 명 칭				
지 번 별 명 세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격 원	현지목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격 원	현지목	비 고		
											페이지			

100-50

[제 7 호 서석외 4석외]								잠종재산(토지)관리대장		(전 면)	
가. 재산의 표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대장가격	발생사유	용도변경 년월일	대각 년월일	비고			
※ 발생사유 : 기부채납, 저술시양여; 도시계획, 담장밖무단점유, 私道등 기재											
나. 점유자 인적사항 및 용도											
점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점유년월일	용도	비고			
※ 용도 : 건물, 장독대, 마당, 쓰레기장등 기재											
다. 연도별 관리 현황											
연도별	토지종류	단가 (m ² 당)	지적 (m ²)	평정가액 (원)	대부요율 (%)	조정대부료 (원상금)	납부 년월일	비고			
1989											
1990											
1991											
1992											
1993											

제 1556 호

시

보

1991. 4. 10

라. 현광도 및 사진		(후 면)
현	광	도
		사
		진
작성년월일 : 19 . . . 작성자 : 지 위 : 편재계장 성명 :  확인자 : 지 위 : 관리과장 성명 : 		

제 1556 호
시
보
1991. 6. 19

[제9호 서식]												제1556호		
임 차 제 산 대 장														
												색인번호		
소	개	지												
차수 물 건	토 지	지도번호	제	호	건	번호	제	호	부	명	칭	수	량	
		자	목				명	칭						
		면	적		m ²		동	수						
			평		평	수		m ² (평)						
소유지주소·성명														
차수 목 적	제	약	년	월	일	차	수	기	간	차수요금	요 금 지 금			
											금	액	지금년월일	적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페이지		

[제10호 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사용자: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무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11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
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정으로 한
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의 일 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
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제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금은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
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

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
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교육감을 보험
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교육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
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교육
감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기타 본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밖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교육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아의가 있을 때에는 본시의 결정에 의한다.

[제12호 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교육감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

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제3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한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제4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문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권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귀속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고 같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4. 용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용이 채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감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용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용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감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감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감의 결정에 의하고 용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 제10조 ①본 계약기간 중에 용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용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감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용은 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용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용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용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감) 서울특별시교육감 ①

임차자(용) ②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3호 서식]

취득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액평정

종 별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부 동 산 과세시가 표 준 액	감 정 액		인 근 매 대 실액	평 가 액		감 정 및 매대실액 년 월 일
						(감 정 기관명)	(감 정 기관명)		단가	금액	
합	계										
	소개										
	1										
	2										
	3										

(기재요령)

- (1) 재산종별은 토지, 건물, 중기, 선박 등으로 재산을 종류별로 기재한다.
- (2) 일련번호는 재산종별로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3) 소개제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행정구역과 지번까지 기재한다.
- (4) 지목 및 구조는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을, 건물의 경우 구조를 기타 재산의 경우 형태를 기재한다.
- (5) 수량은 토지의 경우 m^2 , 건물의 경우 동수와 연건축 면적, 선박의 경우 척수

와 톤수를 기재한다.

- (6) 감정기관의 감정액은 최종 감정한 감정액을 기재한다.
- (7) 인근 매대실액액은 최근 매대된 인근의 유사재산의 m^2 당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8) 평가액은 감정액과 매대실액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표 이상으로 자차 평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 (9) 감정 및 매대실액년월일을 구분 기재한다.

나. 재산현황

종 별	일련번호	소유자별	동의여부	현황도	관리상태
	1				
	2				
	3				

(작성요령) (1) 증별은 위 “가”항의 기재요령과 같음. (2) 일련번호는 “가”항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도록 한다. (3) 소유자별은 공유, 국유, 사유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4)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명백히 기재한다. 4. 취득재원	(5) 현용도,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취득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취득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그 방법을 명시하고 반드시 법적 근거를 표시한다.
--	---

구분	계	재산매각대	국고보조	교부세	기채	일반재원
예산액	원					
기집행액						
잔액						
금회집행액						

(작성요령) (1) 예산액은 재산 매입대로 계산된 총 예산을 기재한다. (2) 기집행액, 잔액 등도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5. 동기부동본 6. 사업계약서	(1)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에 한하여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2) 재산현황(지번, 지목, 면적 및 수량)이 동기부상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는 대장등본을 별도 첨부한다.
---	---

(단위:천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량	시행기간	사 업 비					사 업 과
				계	국비	지방비	용자	기타	
계									

(작성요령)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위치도 및 지적도 (1) 위치도는 당해 재산과 인근한 주요 시설물을 표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2) 지적도는 당해 재산과 인근한 토지	의 주변을 동시에 표시하고 건물이 위치할 경우에는 위치를 명시한다. 8. 사진 임야, 잡종지, 건물 등 재산의 관리상태 파악을 위하여 재산의 사진을 첨부한다. 9. 기부채납시는 기부채납원서를 별도 첨부한다. 10. 도시계획확인원									
[제14호 서식] 치 분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액평정										
종 별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부 동 산 과 세 시 가 표 준 액	감 정 액 (감 정 기관명)	인 근 대 매 액 (감 정 기관명)	평 가 액 단가	평 가 액 금액	감 정 및 대 매 일 년 월 일
합 계										
소계										
1										
2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함. 나. 재산현황										
종별	일련 번호	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 리 상 태	연 고 자 유 무			
		연월일	목 적	가 격						
합 계										
소계										
1										
(작성요령) (1) 종별은 위 "가"항의 기재요령과 같 음. (2) 일련번호 "가"항의 일련번호와 일치										

외도록 한다. (3) 당초 예산조성 및 취득내역 불명시에는 "불명"이라 기재한다. (4) 당초 조성 및 취득물량과 처분물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5) 현용도와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사용허가 및 대부여부를 명백히 기재한다. 2. 처분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3. 처분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그 방법을 명시하되 반드시 법적 근거를 표시한다.																																																							
4. 처분재원의 용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20%;">재산조성내역</th> <th style="width: 10%;">수 량</th> <th style="width: 10%;">금 액</th> <th style="width: 10%;">위 치</th> <th style="width: 10%;">용 도</th> <th style="width: 10%;">지목 또는 구조</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 토지매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 건물신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 건물중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재산조성내역	수 량	금 액	위 치	용 도	지목 또는 구조	비 고	계							1. 토지매입							2. 건물신축							3. 건물중축							4.																			
재산조성내역	수 량	금 액	위 치	용 도	지목 또는 구조	비 고																																																		
계																																																								
1. 토지매입																																																								
2. 건물신축																																																								
3. 건물중축																																																								
4.																																																								
5. 재산관계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건물) 대장등본 ○ 공유재산관리대장 사본																																																								
6. 사업계획서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 style="width: 10%;">사업명</th> <th rowspan="2" style="width: 10%;">세 부 사업명</th> <th rowspan="2" style="width: 10%;">사업량</th> <th rowspan="2" style="width: 10%;">시행기간</th> <th colspan="5">사 업 비</th> <th rowspan="2" style="width: 10%;">사 업 과 효</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지방비</th> <th>용자</th> <th>기타</th> </tr> <tr> <td>합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시행기간	사 업 비					사 업 과 효	계	국비	지방비	용자	기타	합 계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시행기간	사 업 비					사 업 과 효																																											
		계	국비	지방비	용자			기타																																																
합 계																																																								
(작성요령)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 8. 사진 취득의 경우와 동일																																																								

(제15호 서식)

교환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액량정

소유 별	종 별	일 련 번 호	소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부 동 산 과 채 식 가 량 표 준 액	가 정 액		인 근 매 시 액	평가액		감 정 및 매 매 원 액
						(감정 기관명)	(감정 기관명)		단 가	금 액	
공 유	합	계									
		소	계								
사 유	합	계									
		소	계								
차 액 (나 가)	합	계									
		소	계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

나. 재산현황

(1) 공유재산

종 별	일 련 번 호	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 리 상 태	연 고 자 유
		연 월 일	목 적	가 격			
합	계						
	소	계					
	1						

(작성요령)

처분의 경우와 동일

(2) 사유(기타)재산					
종 별	일련번호	소유자별	동의여부	원 용 도	판리상태
	1				
	2				
	3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

2. 교환사유

4.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재산관계 첨부서류
처분의 경우와 동일

(단위:천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시행 기간	사 업 비					사 업 효 과
				계	국비	지방비	융자	기타	
합 계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

5.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의 경우와 동일

6. 사진
취득의 경우와 동일

[제16호 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 공유재산:

○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서울특별시교육
감(이하 "감"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000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
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
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
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
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
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
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파급의 지면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액이 있으면 본 계약제 결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서울특별시교육감 (인) 성 명(을) (인)							
[제17호 서식] 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 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및 구 조	수량	평가액	차수자및 사 용 자	대부및사용 허가 기간	비고
합	계							
	소 계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 단, 평가액 산출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하고 대대실례와 과세서가표준의표 를 기준으로 하여 자체 평정한 금액을 기재								
나. 재산현황								
종 별	일련번호	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용도	관리 상태	신고자 유 무
		연 월 일	목 적	가 격				
합	계							
	소 계							
(작성요령) 처분의 경우와 동일 2. 대부(사용허가)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대부 및 사용계획서 요약) 3. 재산관계 첨부서류 처분의 경우와 동일								

4.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의 경우와 동일

5. 사전
취득의 경우와 동일

[제18호 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
감(이하 "감"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다.

제1조 감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
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	납	금	이	자	계	납부기일

을은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분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
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감을 보
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
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
을 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감은 청회
영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반환한다. 다만, 잔금납부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
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감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
되기 전에는 감의 승인없이 다음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조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를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
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
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
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법에 위반하여
공유재산에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
니한 때

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물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물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산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물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아니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비용은 일체 물이 부담한다.

제11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원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물은 이에 대한 이익을 아니하기로 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물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물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물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서울특별시교육감
위 매수인(물)

인

주소·성명

인

[제19호 서식]

양 여 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물"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물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물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물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물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물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은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제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물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야 한다.

제5조 물은 소유권이전등기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물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물)
성 명(물)

인

인

[제20호 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서울특별시교육감

㉠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 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 가 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1호 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 목(구조) :
- 면 적(건물면적) :

대부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사용)조건 : 귀 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첨부:인감증명서 1부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제 22 호 서식]
공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색인번호

소 개 지											
대부물건지	토지	지도번호	제 호	건	번호	제 호	부	명	청	수	량
	각	목			명	청					
	면	적	m ²	동	수		속				
		평	평	평	수	m ² (평)	물				
대부자주소·성명											

사 용 목 적	계 약 년 월 일	대 부 기 간	대 부 요 금	요 금 정 수		
				금 액	정 수 년 월 일	적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배 이 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97호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광장)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649호(84.11.12)로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건설부고시 제695호(90.10.13)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결정 및 성동구고시 제48호(90.12.19) 지적승인된 지하철 5호선 정거장 및 광장(왕십리)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에 앞서 서울특별시공고 제30호(91.2.12)로 공람공고 완료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 광장)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건설1부: 773-6420) 및 성동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4. 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지하철 5호선 정거장
및 광장(왕십리)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 192
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 광장)
- 명칭: 지하철 5호선 정거장 및 광장
(왕십리)

다.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라. 사업개요

면적: 4,618.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실시 계획인가일로부터 93.12.31

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판제인의 주소, 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참조

지 상 보 상

토 지 조 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m ²)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1	성동구 행당동 168-165	철도용지	717	717	국(철도청)				
					정석호	성동구 도선동 328			
					백근식	" 행당동 168-19			
					신현자	도봉구 번동 413-5			
					변영숙	성동구 행당동 168-18			
					유충국	" 168-17			
					박광순	" 130-33			
					한장득	" 168-18			
					홍부전	" 168-1			
2	168-166	대	110	110	한순옥	성동구 홍익동 528			
3	168-14	대	109	109	김영수	" 행당동 168-14			
4	168-15	철도용지	93	93	김호철	" 168-15			
					강성민	" 168-15			
5	168-16	대	93	93	윤관식	" 168-16			

제 1556 호

시

보

1991.4.10

100-70

연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의의권리자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6	성동구 행당동 168-17	대	139	139	이현재	성동구 행당동 168-17			
7	168-18	철도용지	188	188	정석호	" 도신동 328			
					한장득	" 행당동 168-18			
					변영숙	" 168-18			
8	168-19	대	205	205	백근식	" 169-19			
9	168-20	철도용지	86	86	국(재무부)				
10	168-167	철도용지	41	41	국(재무부)				
11	192-48	대	232	232	연인순	중구 황하동 739			
12	192-47	대	158.3	158.3	백명자	성동구 행당동 192-5	근저당권	(주)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행당동지점)
					김용려	" 192-6	근저당권	행당 1동 재마을금고	성동구 행당동 292-41
					고동옥	" 192-5			
					이기범	" 192-4	근저당권	(주)서울신탁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행당동지점)
					민용동	" 192-5			
					박예분	" 192-5			
					임익득	도봉구 미아동 610-41			
					임연옥	노원구 상계동 757 현암 2동 1305호			
					임경옥	서초구 서초동 산192-3 삼호 6동 407호			

제 1556 호

신

민

1991. 4. 10

100-71

연번	지번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성동구 행당동 192-47	대			임익수	영등포구 당산동4가 88 현대(A) 106동 801호			
					김영철	성동구 행당동 189-2			
					박신규	" 192-5			
					이철용	강원도 원주시 원동 130			
13	192-5	대	1,083	1,083	백명자	성동구 행당동 192-5	근저당권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행당동지점)
					김용래	" 192-6	근저당권	행당1동 새마을당고	성동구 행당동 292-41
					고중옥	" 192-5			
					이기범	" 192-4	근저당권	(주)서울신박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 (행당동지점)
					민용동	" 192-5			
					김용철	" 189-2			
					박신규	" 192-5			
					박예분	" 192-5			
					임익득	도봉구 미아동 610-41			
					임연수	시흥시 상계동 757 원암(A) 2동 1306호			
					임성옥	시흥시 시초동 산 192-3 삼풍(A) 6동 407호			
					임익수	영등포구 당산동4가 88 현대(A) 106동 801호			
14	192-6	대	311.1	311.1	박예분	성동구 행당동 192-5			

제 1556 호

시

보

1991. 6. 10

연번	지번	지목	지적(m ²)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15	성동구 행당동 192-7	대	568.6	568.6	대한통운(주)	중구 서소문동 58-12	근저당권	(주)서우원 신미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영입2부)		
					"	58-12	근저당권	-	중구 남대문로2가 10-1 (해의신설입부)		
16	192-50	도로	155.8	155.8	국(건설부)						
17	192-49	도로	328.7	328.7	성동구						
건물조서											
연번	물건지	구조	용도	건물면적(m ²)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1	성동구 행당동 168-166	세면조 기와	주택	49	22 (무허가)	한순옥	성동구 용역동 528				
2	168-165	목조 기와	"	28	19 (무허가)	한순옥	"				
3	168-166	세면조 기와	"	14	14 (무허가)	한순옥	"				
		대문			1식	"	"				
		담장			L=7M H=1.7M	"	"				
4	168-157	목조 기와	주택	41	24 (무허가)	이동하	행당동 168-13				
		보더 스타브	화장실 장독대		3	"	"				
		침대문			1식	"	"				

연번	물 권 지	구 조	용 도	건물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담 장			L=3M H=2M	이 동 하	성동구 행당동 168-13				
5	168-14	목조 스레이트 기와	주택	88	88	김 영 수	" 168-14				
		브릭 스투트	"		4	"	"				
		브릭 스투트	창고 장독대		6	"	"				
		천 대 문			1식	"	"				
		담 장			L=9M H=1.8M	김 영 수	"				
		행두나무			1주	"	"				
		갈 비			1주	"	"				
6	168-15	세멘트 스레이트	주택	24	24	김 호 철	" 행당동 168-15				
7	168-15	세멘트 스레이트 기와	"	15	15	"	"				
		브릭 스투트	창고 장독대		3	"	"				
		천 대 문			1식	"	"				
8	168-15	브릭 스투트	주택	17	17	강 상 권	" 행당동 168-15				
		브릭 스투트 스레이트	"	12	12	"	"				
		천 대 문			1식	"	"				
		담 장			L=4M H=1.9M	"	"				
9	168-16	브릭 기와	주택	22	22	윤 금 석	" 행당동 168-16				
10	168-16	목조 스투트	"	41	41	윤 금 석	" 행당동 168-16				

제 1556 호

시

보

1991. 4. 10

연번	물 권 지	구 조	용 도	건물면적 (m ²)	권원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의의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68-16	브릭 스타브	창고 창독대		3	윤 금 석	성동구 행당동 168-16				
		철대문			1식	"	"				
		담 장			L=4M H=2M	"	"				
11	168-17	목조 시멘트 기와	주택	38	38	이 현 재	성동구 행당동 168-17				
		브릭 스타브	창고 창독대		5	"	"				
12	168-17	목조 시멘트 기와	주택	20	20 (무허가)	이 현 재	" 행당동 168-17				
13	168-17	목조 스텝트	"	39	39	이 현 재	" 행당동 168-17				
		브릭 스타브	화장실		4	"	"				
		대 문			1식	"	"				
		담 장			L=9M H=1.4M	"	"				
14	168-18	브릭, 목조 스텝트	주택	60	60	한 장 독	" 행당동 168-18				
		철대문			1식	"	"				
		장 마			1주	"	"				
15	168-18	브릭, 목조 스텝트 기와	주택	67	67	정 석 호	성동구 도선동 328				
		담 장			L=5M H=1.8M	"	"				
16	168-18	목조 기와	주택	41	41 (무허가)	변 영 숙	" 행당동 168-18				
	168-18	철대문			1식	"	"				
17	168-19	목조 기와	주택	37	37	백 근 식	" 행당동 168-19				

연번	동·건·지	구·조	용·도	전용면적 (m ²)	면적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브릭 스타브	창고, 창독대		7	백근식	성동구 행당동 168-19				
		철대문			1식	"	"				
18	168-19	목조 스래트룸	주택	81	81	백근식	" 행당동 168-19				
19	168-19	브릭 스타브	"	8	8	백근식	" 행당동 168-19				
		철대문			1식	"	"				
		담·장			L=15M H=1.6M	"	"				
20	168-20	목조 스타브	점포,주택	60	60	신진자	도봉구 번동 413-5				
21	168-20	목조,브릭 스래트	"	50	50	김승기	성동구 행당동 168-20				
	168-20	브릭,목조 스래트	화장실, 창고		4	김승기	"				
22	168-20	브릭 스타브	주택	59	59 (무허가)	김승기	" 행당동 168-20				
23	168-20	브릭 스타브	"	10	10 (무허가)	김승기	" 행당동 168-20				
24	168-20	브릭 스타브	주택	22	22	박광준	" 행당동 130-33				
25	192-48	목조,브릭 스래트룸	창고, 사무실	361.7	177.9	연임순	중구 통학동 739				
		서양속백나무			1주	"	"				
26	192-47	연화조 기와	주택	86.1	65.4	이천용	강원도 원주시 원동 130				
		브릭 스타브	창고, 창독대		3.5	"	"				
		담·장			L=9M H=1.4M	"	"				
		단풍나무			2주	"	"				

연번	주 소 지	주 소	종 목	건물면적	원적면적	소 유 자		소유 권의의근거지			비 고
				(m ²)	(m ²)	상 반	하 반	근거법	상 반	하 반	
		삼천나무			1주	이 환 용	강원도 원주시 원동 130				
		화강암			1주	"	"				
27	192-5	연화초지와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142	142	백 영 자	성동구 행당동 192-5	근저당권	(주)서울신협 9-1(행당동지점)	지하:4.41층: 98.2.2층:39.4	
		벽돌 스타브	주택	9.2	9.2	백 영 자	"				
		브릭 스타브	부엌,창고	17.8	17.8	"	"				
		화강리트로 스타브	공방	29.7	29.7	"	"				
		철대문			3조	"	"				
		담 강			L=13M H=1.7M	"	"				
28	192-5	브릭조 기와	주택	67.4	67.4	김 용 리	" 행당동 192-6	근저당권	행당1동 신협출금고	성동구 행당동 282-41	
		부하 스타브	화장실,창고,창독대		6.1	"	"				
		철대문			1식	"	"				
		담 강			L=29M H=1.6M	"	"				
		은행나무			1주	"	"				
29	192-5	목조 아담	주택	29.2	29.2	고 동 욱	" 행당동 192-5	압류	서울특별시		
		브릭 스타브	화장실,창고,창독대		5	"	"				
		철대문			1식	"	"				
30	192-5	목조 아담	주택	61	61	이 기 범	" 행당동 192-4	근저당권	(주)서울신협	중구 남대문로2가 10-1(행당동지점)	
		브릭 스타브	화장실,창고,창독대		11.8	"	"				

제 156 호
시
표
1991.4.10

연번	부건지	구조	용도	건물면적	면적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관리자			비고
				(m ²)	(m ²)	성명	주소	관리명	성명	주소	
		철대문			1식	이 기 범	성동구 행당동 192-4				
31	192-5	목조 와글	주택	45.2	45.2	민 용 동	" 행당동 192-5				
		트럭 번나이브	"		9.4	"	"				
		대 문			1식	"	"				
32	192-5	목조 시멘트기와	주택	31.1	31.1	김 영 철	" 행당동 189-2				
		철대문			1식	"	"				
		감나무			1주	"	"				
33	192-5	목조와글 지상2층	주택	117.3	117.3	박 신 규	성동구 행당동 192-5				1층:82.2 2층:55.1
34	192-5	목조 와글	"	31.3	31.3	박 신 규	" 행당동 192-5				
		철대문			1식	"	"				
		서양옥배나무			2주	"	"				
	192-5	대수나무			1주	박 신 규	"				
		감나무			1주	"	"				
35	192-5	목조 와글	주택	141.2	141.2	박예분의 4인	" 행당동 192-5				지하:14.6 1층:126.6
36	192-5	목조 기와	주택	26.1	26.1	박예분의 4인	" 행당동 192-5				
37	192-5	목조 와글	주택	44.2	44.2	박예분의 4인	" 행당동 192-5				
38	192-3	목조 와글	"	32.2	32.2	박예분의 4인	" 행당동 102-5				
		마장식 창고			4.2	"	"				

제 1556 호

시

구

1991.4.10

연번	물 건 지	구 조	용 도	전용면적 (m ²)	전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관리명	성 명	주 소	
		천내온			1식	박예분의 4인	상동구 행당동 192-5				
		남 장			L=29M H=1.4M	"	"				
		리일막			5주	"	"				
		서창옥떡나무			6주	"	"				
		죽백나무			1주	"	"				
		앵두나무			2주	"	"				
	192-5	은행나무			1주	박예분의 4인	" 행당동 192-5				
		대추나무			1주	"	"				
		살구나무			1주	"	"				
		사철나무			1주	"	"				
		장 미			1주	"	"				
39	192-6	특조 스테트	주력	110.7	110.7	박 예 분	"				
		브릭 스테트	화장실		4.1	"	"				
40	192-7	황금권크리드조 스라브 지상3층	사무실	475.8	475.8	대한봉운 (주)	중구 서소문동 58-12	근저당권	(주)서울 신택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영업2부)	1층:158.6,2층: 158.6,3층:158.6
						"	"	근저당권	(주)서울 신택은행	(해외건설업무실)	
		브릭 스톱브	창고		7.4	"	"				
		브릭 스톱브, 스래트	화장실 새면장		9.9	"	"				
		브릭 스테트	창고		14	"	"				

연번	물 건 지	구 조	용 도	건물면적 (㎡)	권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철대문			1식	대한통운 (주)	충구 서소문동 58-12	근저당권			
	192-7	담 장			L=7M H=2M	"	"				
		대추나무			1주	"	"				
		국 린			1주	"	"				

제 1556 호 시 본 1991. 4. 10

●서울특별시고시제98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허가및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동별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하고, 동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서초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1991. 4. .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 명칭: 화폐교환장 건설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능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안교덕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191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일부터 1991.12.20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단위: m)

위 치	용 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창고(1)	5,510	7,216	지 하
	창고(2)	-	3,626	
	전시 및 재배운실	11,687	11,687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사업시행자 소유

사. 사업시행 규모

○ 대지면적: 88,695.05㎡

○ 건축규모

- 건축면적: 19,202.29㎡

- 건축연면적: 36,765.05㎡

- 판매시설: 25,362.02㎡

- 매 장: 293.48㎡

- 적하시설: 288.30㎡

- 기타 부대시설: 881.24㎡

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시설계획과

비치 도면과 같음.

자. 개략 공사설계 도서: 시설계획과 비치 도면과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98호

관인(청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매점운영위원회"의 관인(청인)을 서울특별시관인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재교부합을 동 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1991년 4월 13일
2. 관인 재교부 내역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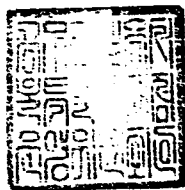
1991. 4. 8

승 인 인 영

구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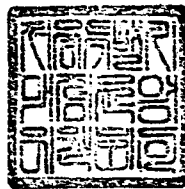
승 인 내 역

구 인 영
(폐기인영)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운영위원회 인)

신 인 영
(재교부인영)



(서울특별시 매점운영위원회 (인))

◎서울특별시공고제96호

관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호적등·초본
용)의 관인을 서울특별시관인규칙 제5조 규

정에 의거 재교부합을 동 규칙 제8조에 의하
여 공고합니다.

1991. 4. 8

서울특별시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1991년 4월 13일
2. 관인 재교부 내역 : 별첨

승 인 인 영	
구 분	승 인 내 역
구 인 영 (폐기인영)	 (마포구청장 호적등·초본: 인증기용) 제8권 002415('88.12.29~'91.4)
신 인 영 (재표부인영)	 (마포구청장 등·초본용: 인증기용)
●서울특별시공고제102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에따른서류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등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991. 4. 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로1유수지 복개 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	
2. 사업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0 일대 3. 사업규모 사업면적: 11,630㎡, 유수지복개: 9,670㎡, 주차대수: 273대(평면주차) 4. 사업시행자: (주)기산 대표이사 김희형 5. 공사기간: 91.4~92.8(17개월) 6. 공람기간: 91.4.12~91.4.25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별첨 8.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 담당관실(777-9151~2)	

토 지 조 서					
서원명	지 번	지목	지적(m ²)	소 유 자	비 고
주차장	구로구 구로동 3-31	잡	34	기아특수강주식회사	
	구로구 구로동 3-33	잡	817	기아특수강주식회사	
	구로구 구로동 3-30	도	26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7	도	27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5	대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6	대	23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4	잡	9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	담	67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7	잡	27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4	잡	3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	담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4	대	1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	잡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0	진	3,1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	담	28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1	담	23	대한중석광업(주)	
	구로구 구로동 1-11	대	2,2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	담	26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9	대	30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6	천	60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55	천	772	서울특별시	
계	21필지		11,620		

구 고 시

●영동포구고시제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

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
니다.

1991. 4. 8

영 동 포 구 고 시 장

1. 민영주택건설 사업변경 승인내역

가.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나. 사업주체: (주)대우 제33차장주택조합
의 2개 조합

다. 시행위치 : 영등포구 대림동 785번지 라. 대지면적 : 9,138.7㎡ 마. 사업규모 : 20층 2동 28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건축면적 : 32,911.92㎡ 사. 사업비 : 23,200,000천원 다. 사업기간 : 91.2.~92.12.31 2. 도면 : 생략 3. 기타 :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비 치보관	및 지적승인되고 건설부고시 제249호(89.5.22)와 건설부고시 제334호(90.12.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99호(90.12.8)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도시계획시설 (월곡, 제1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6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동 사업을 시행변경 허가드립니다.																					
●도봉구고시제9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 시행변경허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424호(85.9.24) 및 서울 특별시고시 제300호(85.10.5)로 시설결정	1991. 4. .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번동 산 28-6번 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 변경시행 명칭 : 월곡제1근린공원(드림랜드) 변 경시설설치 다. 사업시행 변경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변 경 전</th> <th>변 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시 설 규 모</td> <td>휴양시설 외 7종</td> <td>과 동</td> </tr> <tr> <td>면 적</td> <td>347,971㎡</td> <td>과 동</td> </tr> <tr> <td>시 설 면 적</td> <td>127,369㎡</td> <td>128,918.6㎡</td> </tr> <tr> <td>건 축 면 적</td> <td>11,358.21㎡</td> <td>12,351.21㎡</td> </tr> <tr> <td>사 업 시 행 자</td> <td>일우공영(주) 대표이사 조 용 하</td> <td>일우공영(주) 대표이사 김 남 현</td> </tr> <tr> <td>사 업 시 행 기 간</td> <td>88.12~91.12.31</td> <td>91.4~91.12.31</td> </tr> </tbody> </table>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 설 규 모	휴양시설 외 7종	과 동	면 적	347,971㎡	과 동	시 설 면 적	127,369㎡	128,918.6㎡	건 축 면 적	11,358.21㎡	12,351.21㎡	사 업 시 행 자	일우공영(주) 대표이사 조 용 하	일우공영(주) 대표이사 김 남 현	사 업 시 행 기 간	88.12~91.12.31	91.4~91.12.3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 설 규 모	휴양시설 외 7종	과 동																				
면 적	347,971㎡	과 동																				
시 설 면 적	127,369㎡	128,918.6㎡																				
건 축 면 적	11,358.21㎡	12,351.21㎡																				
사 업 시 행 자	일우공영(주) 대표이사 조 용 하	일우공영(주) 대표이사 김 남 현																				
사 업 시 행 기 간	88.12~91.12.31	91.4~91.12.31																				
●노원구고시제20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시행허가 1. 건설부고시 제151호(85.4.10) 및 건설부 고시 제120호(86.3.24)로 지구지정 및 실	시계획 승인된 서울 상계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1991. 3. .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노원구 상계동 76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 시설)

명칭: 혈액원 신축

다. 사업의 규모: 대지면적 9,353㎡, 건축 면적 1,218㎡, 연면적 3,999㎡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3가 32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마. 사업기간: 91.4.1~91.12.31

구 공 고

●양천구공고제3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 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1. 4. 3

양 천 구 청 장

인 가 일 자	1991. 4. 2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상하수도: 89-서울-13-07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인	
성 호	(주) 건 지 주 택	공 신 건 설 (주)	
영 업 소 재 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5-4	인천시 남구 주안동 215-8 3층	
대 표 자	신 우 경	이 중 욱	

●구로구공고제37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구로구 도시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1. 4. 10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경미과

나. 공람기간: 91.4.10~91. 4. 23(14일간)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내용과 같은 라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안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능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	8	1,570	국지도로	오류동 108-75	항동 161-2	

●영등포구공고제39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31호(90.12.31)로 시
선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1호(91.2.7)
로 지적고시된 영등포구 대림동 994의 31
대림우수배제펌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방수설비)을 실시코자 도시계획법 제25
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방수시설)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 공람 공고
코자 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

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
음합니다.

3. 판제도서는 영등포구청 하수과와 건설관
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991. 4. 4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다.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마.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사 업 명	사업의 시행지	사 업 규 모	사업시행기간
대림우수배제 펌프장 시설공사	영등포구 대림동 994-31	펌프장시설 : 1동 277㎡ 모타펌프설치 : 250HP×3대 토출암거(2m×1.30m)L=43.6m	인가일-'92. 12. 31.

토 지 조 서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 의 권리명세
		종년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영등포구 대림동 994-31	대지	1,210.7	470	영등포구 대림동 1002	(주)백양	
제(1필지)		1,210.7	470			

●은평구공고제5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354호('90.10.24)로 시설결
정 및 (서울)은평구고시 제7호('91.3.23)로
지적승인된 수색동 205의 433~205의 677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
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
시계획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
고 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판제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

1991. 4.

은 경 구 청 장

— 공 람 개 요 —

가. 사업명: 수색동 205-430~205-677간
도로확장공사

나. 위 치: 수색동 205-433~205-677간

다. 사업규모: 도로확장 B=4~6m

L=340m(도로)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91. 4. ~
9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성동구공고제58호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615(88.7.13)호 및 농
고시 제415(89.9.4)호로 도시계획사업(학
교)변경시행허가된 우리구 관내 화양동
4-1 일대 건국대학교 시설확충공사에 대
하여 사업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57조
의 2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450-
13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4. 8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성동구 모전동 9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사업의 명칭: 건국대학교 시설 확충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입안

다. 사업시행규모

○ 시행면적: 478,233㎡

○ 사업내용

· 가정대학 실습실 및 가스배설각 1동
면적: 737.92㎡

· 기숙사증축: 연면적 60.33㎡

· 축산대학 증축: 연면적 3,546.5㎡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동구 모전동 93-1

성명: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이사장

유승윤

마. 사업: 착수년월일-88.8.23

준공년월일-90.12.30

바. 공사설계도서: 준공 도면 별첨(생략)

●서초구공고제1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입안
공람공고

1. 서초구 도시계획시설(도로)매지결정(변
경)입안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6
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하여 14일간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관계도서는 아
래 장소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장소: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1991. 4. 3-1991. 4. 17

1991. 4.

서 초 구 청 장

구분	위 치	등급	폭원(M)	연장(M)	기 점	시 점	비 고
변경	서초동 1744-7	소로	6	50	서초동 1608-1	서초동 1608-14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건물) 목록과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수용신청 지적(M ²)	지장물	지장물 구 조	수용신청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수색동 205-1667	대	2				수색동 205-8 "	박덕배 김상수	용산구 원효로4가 113의 25	현대자동차 서비스 주식회사	근저당권
2	수색동 205-1654	대	7				수색동 205-778	김성덕			
3	수색동 205-1656	대	22				수색동 205-289	한재근			
4	수색동 205-1657	대	7				수색동 205-734	박우주			
5	수색동 205-1658	밭도 용지	3					재무부			
6	수색동 205-1663	대	13				수색동 205-560 수색동 205-281	황찬익 윤석규	(46/56) (10/56)		
7	수색동 205-1664	대	7				수색동 205-1245	김진하			
8	수색동 205-1665	대	12				수색동 205-422	윤화영			
9	수색동 205-1636	밭도 용지	18					재무부			
10	수색동 205-1655	밭도 용지	12					재무부			
11	수색동 205-502	밭도 용지	17					재무부			

100-85

연번	지 역	지목	수용신청 지적(M ²)	지장물	지 장 물 구조	수용신청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2	수색동 205-502	철도 용지	9					재무부			
13	수색동 205-504	철도 용지	9					재무부			
14	수색동 205-1639	철도 용지	22				수색동 205-289	한재근			
15	수색동 205-1659	대	8				수색동 205-285	염태산			
16	수색동 205-1660	대	14					국세청			
17	수색동 205-1661	대	8				부천시 남구 소사동 298-4	양순애	(6/25)		
							수색동 205-283	최육연	(6/25)		
							"	하 복	(4/25)		
							"	하정순	(4/25)		
							"	하영인	(4/25)		
							"	하성애	(1/25)		
18	수색동 205-1652	대	16				수색동 205-682	우동근			

제 1556 호

시

보

1991.4.10

06-02

연번	지번	지목	수용신청 지적(M ²)	지장물	지장물 구 조	수용신청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9	수색동 205-1545	도로	13					재무부			
20	수색동 205-1511	도로	2				수색동 205-34	박이순			
21	수색동 205-35	철도 용지	28					재무부			
22	수색동 205-560			계단 1식	콘크리 트조	0.3×8M	수색동 205-560	황찬익			373-7552
23	수색동 205-682			건물 화장실		9.1M ² 1.2M ²	수색동 205-682	우동근			373-0324 (무허가)
24	수색동 205-283			건물		7.1M ²	수색동 205-283	하용복			372-8462 (무허가)
25	수색동 205-284			건물 대문 담장	철제	9.8M ² 1식 1.7×3.8M ²	수색동 205-284	윤상순			372-6734 (무허가)
26	수색동 205-734			건물	브릭조 스레트	10.2M ²	수색동 205-734	박우주			373-6972
27	수색동 205-25			건물 가건물	브릭조 스레트 "	14.4M ² 6.4M ²	수색동 205-289	한재근			
28	수색동 205-273			대문 (차고)	철제 스라브 위기와 돌붙임	1식	수색동 205-273	이은택			372-8376

제 1556 호

시

HI

1991. 4. 10

연번	시 번	지목	수용신청 지적(M ²)	지장물	지장물 구 조	수용신청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9	수색동 205-272			건물(1층) (2층) 대문 담장 계단 화장실 수도전	연와조, 평옥 세면와 급,철재 세면브리 세면조 브레이크 스래트	3.1M ² 3.1M ² 2식 3.7×2.1M ² 1식 1식 1식	수색동 205-272	전제진			373-6117
30	수색동 205-674			건물 창고 대문 담장 수도관설치		0.6M ² 1식 1식 11.5×1.7M 1식	수색동 205-674	이희태			(무허가)
31	수색동 205-1640			건물		5.4M ²	수색동 205-1640	한재근			374-1161 (무허가)
32	수색동 205-676			건물 건물	세면브리 세면와급	5.8M ² 4M ²	수색동 205-676	정태순			308-1195
33	수색동 205-1539			건물 담장 수도관설치 가건물		1.1M ² 4.5×1.9M ² 1식 1식	수색동 205-1539	배학근			무허가

제 1556 호

시

군

1991. 4. 10

영번	지번	지목	수용신청 지적(M ²)	지장물	지장물 구 조	수용신청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4	수색동 205-815			담장 수도계량기 대문 계단	적벽돌 철재	7.8×1.9M ² 1식 1식 1식	수색동 205-815	김규환			373-6683
35	수색동 205-7			담장 대문 쓰레기통 사철나무 은행나무 장미 개나리 단풍(대) 라일락	적벽돌 새벽조	9.2×2M ² 1식 1식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수색동 205-7	박종숙 (1층1호) 이순구 (1층2호) 박병선 (2층1호) 조인구 (2층2호)			
36	수색동 205-293			건물 화장실		11.5M ² 2.3M ²	수색동 205-203	이종배			302-6402 (무허가)
37	수색동 205-295			건물		6.8M ²	수색동 205-295	이종명			무허가
38	수색동 205-675			건물 대문 담장		5.2M ² 1식 2.6×1.8M	수색동 205-675	구명훈			무허가

●서초구공고제13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

처분(등록말소및영업정지)공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조 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1. 4. 4

서 초 구 청 장

영 업 정 지 자 명 단

일련 번호	등록 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영업정지 일	영업정지 기간	사 유
1	85-3	선 창 건 설	차 급 주	방배동 751-6 478-1	91. 4. 4	91. 4. 4 ~7. 3.	실적미달 (3)
2	86-19	청 광 실 업	곽 정 훈	서초동 1534-2	"	91. 4. 4 ~5. 3	(1)
3	88-19	무 림 주 택	김 상 기	서초동 산62-3	"	"	(1)
4	88-36	제림아키타운	이 계 한	반포동 52-7 (5층)	"	"	(1)
5	86-2	우진래저건설	김 경 태	반포 736-2	"	91. 4. 4 ~10. 3	(6)
6	87-7	비 호 개 발	김 상 학	서초동 1451-49	"	"	(6)
7	88-7	광 우 건 설	방 영 석	서초동 1534-5	"	"	(6)
8	88-18	제 포 실 업	서 영 복	서초동 1572-7	"	"	(6)
9	88-20	20 세 기 실 업	조 기 원	방배동 837-1	"	"	(6)
10	88-21	삼화종합건설	김 성 진	방배동 453-23	"	"	(6)
11	88-23	신 동 팀 건 설	김 용 범	서초동 1337-17	"	"	(6)
12	86-24	간 동 토 건	이 동 원	반포 1-8 경남소평414호	"	"	(6)
13	88-26	화 성 건 업	윤보현외1	방배 950-6	"	"	(6)
14	88-27	한양진흥개발	김 휘 남	서초동 1364-7	"	"	(6)
15	88-30	동 광 건 설	전 삼 래	서초동 1302-45 양정B/D 202호	"	"	(6)

등록말소자명단							
일련 번호	등록 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제 지	말소 일자	말소사유	근거법령 (주축법)
1	83-8	무 진 주 택	이 경 복	양재동 86	91.4.4	무단장소 변경(폐업)	주축법 7조
2	85-4	세 창 건 설	이 강 호	서초동 1337-17	"	"	"
2	85-1	세 창 건 설	한 명 식	서초동 1503-14	"	"	"
3	87-1	태 풍 주 택	한 명 식	서초동 1503-14	"	"	"
4	87-9	건화환경개발	이 태 호	반포동 746-5	"	"	"
5	87-15	삼 일 중 합	황 영 익	서초동 1303-13	"	"	"
6	88-1	현대반포주택	신 재 석	방배동 819-32	"	"	"
7	88-6	아 산 건 설	최 양 결	방배동 481-5	"	"	"
8	88-22	하 우 정	김기좌외2	서초동 492-1 무지개쇼펍605호	"	"	"
9	88-25	미주산업개발	임 수 원	방배동 1031-2호 미주프라자 205	"	"	"
10	88-29	보 미 주 택	김 창 숙	방배동 909-8	"	"	"
11	88-31	동 녀 건 설	박 영 욱	내곡동 산12-2	"	"	"
12	89-6	경 우 건 설	강 대 철	방배동 950-4	"	"	"
13	89-10	원중주택건설	현 종 진	서초동 1524-22	"	"	"
14	89-30	여명종합주택	박 한 상	서초동 1341-3	"	"	"
15	89-39	극 동 주 택	소 병 읍	서초동 1624-12	"	"	"
16	89-40	호 광 건 설	이 순 재	방배동 908-1	"	"	"
17	89-81	웅 진 토 건	원 용 구	서초동 1671-5	"	"	"
18	89-85	중 부 주 택	이 은 재	서초동 1305-8 (402호)	"	"	"
19	89-91	천 평 사	정 히 복	서초동 1532-8	"	"	"
20	89-105	동 낙 주 택	김 경 길	서초동 1566-12	"	"	"
21	89-107	아 세 아 중 합 상 사	유 명 화	방배동 981-24 유성B/D 201호	"	"	"
22	89-117	하 이 택 건 설	김 승 복	서초동 922-15	"	"	"
23	89-120	신동아판박	양 화 석	양재동 282-4	"	"	"
24	90-37	아 성 토 건	김 수 진	방배동 795-25	"	"	"
25	90-40	서 오 진 흥	강 대 만	방배동 830-5	"	"	"
26	90-78	정 남 공 영	박 용 복	서초동 1337-22 (취양B/D호)	"	"	"
27	90-81	삼원하우징	양 재 학	양재동 69-5	"	"	"

일련 번호	등록 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제 지	합소 일자	합소사유	근거법령 (주축법)
28	90-83	통신토공주택	정 충 식	양재동 265-16	91.4.4	무 단 장 소 변경(계입)	주축법 7조
29	90-96	대신건축기획	고종렬외1	서초동 1357-42	"	"	"
30	90-118	갑 호 건 설	나 철 주	서초동 1445-13 B-203	"	"	"
31	90-120	유진주택건설	이 호 열	잠원동 39-13	"	"	"
32	90-156	제 우 공 영	홍 기 인	서초동 1364-54	"	"	"
33	90-158	태 일 건 설	이 태 일	서초동 1585-1	"	"	"
34	90-163	명 인 환 경 인	김 영 렬	서초동 1440-1 (301호)	"	"	"
35	90-185	삼영하우징	이 영 식	서초동 1425-3	"	"	"
36	90-79	증원건축업	김 낙 중	서초동 1425-18	"	자진반납	"
37	89-102	대정전산업	송 창 현	서초동 1439-1 금강B/D 305	"	"	"
38	89-493	안 산 주 택	안 국 순	양재동 373	"	"	"
39	90-269	대 진 주 택	이 호 식	방배동 537-8	"	"	"
40	90-150	신 유 립	오 기 봉	양재동 277-3	"	"	"
41	89-79	평 화 건 설	윤 진 태	서초동 1337-14	"	"	"

●도봉구공고제17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를 인가하였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1. 4. .

도 봉 구 청 장

인가 일자	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제 지	대표자	상 호	소 제 지	대표자
'91. 4. 9	철물공사업 89-서울-11-06	우일건설 산	서울 도봉구 창동 715-8	최 돈	백산금속	서울 구로구 시동동 969-3	최승갑

사 령

●1991년 4월 8일자

4급 행정직 공무원 전보

영 제103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박 충 희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내 무 국	지방서기관

●1991년 4월 8일자 5급 기술직 공무원 전보 영 제10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영수	자동차관리사업소 검사과장	운수2과	지방기계기과
서재석	운수2과 정비계장	차량정비(사)	"
이동윤	차량정비사업소장	자동차관리(사)	"
●1991년 4월 8일자 5급 행정직 공무원 전보 영 제10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일영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과장	종로구	지방행정사무관
배상필	자동차관리사업소 지소장	강서구	"
●1991년 4월 8일자 5급 행정직 공무원 직위해제 영 제10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원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내무국 대기를 명함.	자동차관리(사)	지방행정사무관
권옥승	"	"	"
●1991년 4월 8일자 4급 행정직 공무원 직위해제 영 제10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영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내무국 대기를 명함.	자동차관리(사)	지방서기관
●1991년 4월 8일자 기능직 공무원 전보 영 제10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점숙	강서구	자동차관리(사)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김연수	영등포구	"	"
최현순	남산공원관리사무소	"	"
김경희	영등포구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공선화	중 구	자동차관리(사)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안해관	관 악 구	"	"
한명옥	영 동 포 구	"	"
하정희	동 작 구	"	"
엄분용	서 대 문 구	"	"
강선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
윤숙현	남부건설사업소	"	"
배성연	동 대 문 구	"	"
이숙희	마 포 구	"	"
박선희	기술심사담당관	"	"
채정희	상수도사업본부	"	"
박미순	강 동 구	"	"
임영숙	공업시험소	"	"
권현숙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임미강	영 동 포 구	"	"
민경혜	관 악 구	"	"
탁광숙	동부건설사업소	"	"
강소영	중 구	"	"
박유선	조사담당관	"	"
정미숙	종합건설본부	"	"
정희영	강 남 구	"	"
강금연	상수도사업본부	"	"
조종숙	공무원교육원	"	"
양인옥	강 남 구	"	(조무)
서춘자	상수도사업본부	"	"
채계수	성 동 구	"	"
이명순	자동차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타자)
서숙원	"	서대문문구	"
안종환	"	남부건설(사)	"
이순희	"	영 동 포 구	"
김기윤	"	관 악 구	"
백복녀	"	동 작 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고정이	자동차관리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김종래	"	중구	"
이정이	"	영등포구	"
이재영	"	시립대학교	"
임현주	"	영등포구	"
최희경	"	서울대공원관리(사)	"
이영미	"	남산공원관리(사)	"
익금애	"	강동구	"
허은숙	"	동부건설사업소	"
박정숙	"	중구	"
이혜숙	"	시립대학교	"
김춘화	"	강남구	"
조임자	"	상수도사업본부	"
박현주	"	영등포구	"
이성옥	"	기술심사담당관	"
장인숙	"	종합건설본부	"
금은옥	"	공업시험소	"
정영숙	"	강서구	"
이광유	"	마포구	"
장숙자	"	관악구	"

●1991년 4월 10일자

4급 공무원 전보

영 제10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상진	내무국	내무국(비서관)	서기관

●1991년 4월 10일자

4급 공무원 면직

영 제11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영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내무국	지방서기관

●1991년 4월 10일자 인사 발령 통지 영 제111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이 경 호	서울특별시 비서관(4급상당)에 임함.		
●1991년 4월 10일자 지방별정직 9급상당공무원 파견해제 영 제112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정 옥 자	인사과 파견근무를 해제함.	양 천 구	지방별정직 9급상당
●1991년 4월 10일자 지방별정직 6급상당공무원 의원면직 영 제113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 학 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운 영 과	지방별정직 6급상당
●1991년 4월 10일자 지방별정직 6급상당공무원 신규임용 영 제114호			
성 명	발령 사항	직 급	
김 충 구	지방별정직 6급상당공무원(무대남당)에 임함 세종문화회관 근무를 명함.	신 규	
이 영 희	지방별정직 7급상당공무원(공연담당)에 임함 세종문화회관 근무를 명함.		
남 석 기	지방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지도교관)에 임함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근무를 명함.		
지 기 연	지방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지도교관)에 임함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근무를 명함.		
박 경 순	지방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영양사)에 임함 시립부녀보호소 근무를 명함.		
황 온 희	지방별정직 7급상당공무원(훈련교사)에 임함 노원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윤 후 남	지방별정직 8급상당공무원(훈련교사)에 임함 노원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공무 국외여행 명령 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정비	여행목적
소 속	직 명	성 명				
수도기술 연구소	전문직 다 급	이 병 철	미 국 일 본	'91.4.13 ~4.24 (12일간)	시 비 (8,650 \$)	미국 "수도협 회" 주최 컴퓨터 를 이용한 수처 리 세미나 참석
영 동 포 수 원 지	전기장 6등급	염 용 근	"	"		
공무 국외여행 명령 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정비	여행목적
소 속	직 명	성 명				
내무국	지 방 부이사관	진 영 호	미 국	91.4. 1 ~92.3.31 (1년간)	국 비 (47,533 \$)	미국 "웨스트랜 드대학" 훈련